

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 
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 
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  
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면제  
대상임을 알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  
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 
있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 
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  
관한조례중개정조례

서산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  
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조에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 
행한다.

② (시행기간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  
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 
다.

신·구조문 대 비 표

현	개 정 안
<p>제2조 (면제대상)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 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·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. 다만, 그 시설을 다른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</li> <li>2.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</li> <li>3.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</li> <li>4.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·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</li> <li>5.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 설)</p>	<p>제2조(면제대상) “(현행과 같음)”</p> <p>1~5“(현행과 같음)”</p> <p>6.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</p>

서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

서산군상수도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중 “별표 제2호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27조 제 1항중 “별표 제 3호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